

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'97. 12. 22  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7. 12. 13

○ 회부일자 : '97. 12. 13
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○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 ('97. 12. 22)

2. 제안설명 요지

(기획관리실장 : 김 동 기)

가. 제안이유

- 법령질의 및 쟁송사건 증가로 고문변호사 업무 증대
-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 유도
- 고문변호사에게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제안하여 사명감 부여

## 나. 주요골자

- 고문변호사 위촉을 2인이내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함
-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
-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도소송 대리를 추가하고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사회의 다변화와 주민의 욕구가 상응하는 데 발맞추어 각종 법령 진의 및 쟁송사건의 증가로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첫째, 고문변호사 수를 2인이내에서 3인 이내로 1명을 더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고

둘째,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

세째,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해 사명감을 부여하여

행정업무의 전문화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6명, 찬성 6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-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안

- 신·구조문대비표